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민성·김영태·박세채
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
장미경·허민근 의원(10인)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표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나. 부서검토: 예산재정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

하여 공사현장, 시설 또는 단체의 내부·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물품·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지방보조금액,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3. 지방보조사업 내용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

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제9조(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 팸플릿 등에 지원표시를 해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지원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표시에 관한 적용례) 차량 및 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교부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예산재정과

조 례 명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지원표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시민의 알 권리 강화○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